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7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전진속 · 남인순 · 이주희
김남희 · 최혁진 · 양부남
김정호 · 이인영 · 정을호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 4.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여전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 미흡으로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송화로 인한 장기간 분쟁,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의료분쟁 당사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화를 방지하고

자 함.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추가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하여,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보다 전문적인 수사 지원 등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심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외상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긴급하거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필수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9호, 제2조의2 신설).

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고소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라. 조정·중재가 성립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의7 신설).

마.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수의료행위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46조의8 신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

실이 있는 의료행위’(이하 “중대한 과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여 환자에서 감염이 발생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가 잘못되어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환자나 수술 부위를 착오하여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 제1장에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사고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의3(의료사고 설명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 사고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은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의 설명 내용·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등

제46조3(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의료사고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여부

2. 의료사고의 중대한 의료과실 관련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
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의료인 5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3.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5
명

4. 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사무국) 제46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6조의5(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의 요청 전에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할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 완료 후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료행위 여부 등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자료의 제공)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7(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제46조의8(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① 필수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위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소제한의 결정에 있어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필수의료 행위 여부, 의료행위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의료감정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46조의9(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필수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제47조 및 제4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책임보험 등

제47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 설자는 의료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등 상품 설계,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국가 지원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수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관리 업무 위탁,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의료사고의 설명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한 경과조치)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u><신 설></u>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u><신 설></u>	9.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신 설>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이하 “중대한 과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여 환자에서 감염이 발생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

<신 설>

<신 설>

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가 잘못되어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환자나 수술 부위를 착오하여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료사고로 인한 「형법」 제268
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
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의3(의료사고 설명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
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개

설자등”이라 한다)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신 설>

<신 설>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등은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의 설명 내용·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등 제46조의3(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의료사고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여부

2. 의료사고의 중대한 의료과실 관련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의료인 5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3.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5명

<신 설>

<신 설>

4. 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사무국) 제46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6조의5(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의 요청 전에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할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전에 제47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

<신 설>

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 완료 후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료행위 여부 등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자료의 제공)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의3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7(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3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제46조의8(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① 필수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위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소제한의 결정

<신 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

에 있어 시·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필수의료 행위 여부, 의료행위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의료감정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46조의9(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필수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책임보험 등
제47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등 상품 설계,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부과·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의료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국가 지원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행위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